

제 호

먹는물 수질 감시원증

사 진  
(3.5cm×4.5cm)

소 속 :

직 위(직급) :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「먹는물관리법」 제7조, 제42조,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환 경 부 장 관

서울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

시 장·군 수·구 청 장

(뒷면)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조사·지도·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.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